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사항**: ①채권운용전문인력 변경 (신홍섭 → 전춘봉)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⑤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효력발생일**: 2020. 7. 9.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 른 갱신		<u>2020.6.26 기준</u>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 - 재		<u>2020.5.31 기준</u>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 른 갱신		<u>2020.6.26 기준</u>
운용전문인력	채권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신홍섭</u> <u>2020.3. 31 기준</u>	<u>전춘봉</u> <u>2020.6.30 기준</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채권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신홍섭</u> <u>2020.3. 31 기준</u>	<u>전춘봉</u> <u>2020.6.30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채권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신홍섭</u> <u>2020.3. 31 기준</u>	<u>전춘봉</u> <u>2020.6.30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채권운용인력 변경	-	<u>2020.1.9 ~ 2020.7.8 :</u> <u>신홍섭</u> <u>2020.7.9~현재 : 전춘봉</u>
6. 집합투자기구의 구	기업공시서식 변경에 따른 -		<u>누락 기재</u>



조	추가 누락		
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 지분증권(주식 등)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지분증권(주식 등)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가. 투자 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	표준편차 : 1.83%	<u>표준편차 : 3.31%</u>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0. 6. 26 기준</u>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 누락 기재	-	<u>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나. 과세 4)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가입		<u>[별첨]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u>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0. 6. 26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매매 현황	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0. 6. 26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020. 6. 26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0. 3. 31 기준 2020. 6. 30 기준

가. 회사 개요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나. 주요 업무

(3) 업무위탁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가. 수익자총회 등</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p>
<p>-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 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p>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한다) / 집합투자업자 변경 한다)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고시하는 사항

〈신 설〉

-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사
 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
 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
 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
 으로 집합투자업나 신탁업자
 에게 보상하여야 함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가 법령·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
 에 동의한 경우

-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
 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
 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함

1. 대상금액 :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함

2. 대상기간 :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집합투자기구의 공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 한국예탁원

시에 관한 사항 경사항 반영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

고서

3. 집합투자기구의 공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 한국예탁원

시에 관한 사항 경사항 반영

전자등록기관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별첨]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 <th>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세액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td> <td>400만원 (700만원)</td> <td>600만원 (900만원)</td> <td>15%</td> </tr> <tr> <td>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td> <td></td> <td></td> <td>12%</td> </tr> <tr> <td>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td> <td></td> <td>300만원 (7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p>※지방소득세 별도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2. 12. 31.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p>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단,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